



H A N D O N G G L O B A L U N I V E R S I T Y

한 동 대 학 교 · 2 0 2 3 학 년 도

대 학 입 학 전 형 시 행 계 획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모집인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모집요강'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I. 주요 사항

■ 수시 주요사항	4
■ 정시 주요사항	7
■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	8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9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0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1

II. 수시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3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4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15
■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16
■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17
■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8
■ 학생부종합(대안학교)	19
■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20
■ 학생부종합(고른기회)	22
■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24
■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25

III. 정시

■ 수능(일반학생)	27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28
■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30

IV. 재외국민과 외국인

■ 재외국민(3월 입학)(정원외)	32
■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정원외)	34
■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정원외)	36
■ 외국인(3월/9월 입학)(정원외)	37

PART 1. 주요사항

1. 수시 주요사항
2. 정시 주요사항
3.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
4.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6.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수시 주요사항

가. 총 모집인원 (정원내외 포함)

2022학년도
783명



2023학년도
786명 <u>정원의 장애인 전형(3명) 신설</u>

나. 전형요소별 모집인원

2022학년도			
구분	전형요소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235	30.0
	<u>학생부종합</u>	<u>479</u>	<u>61.2</u>
	기타 (재외국민)	14	1.8
정시	<u>수능위주</u>	<u>55</u>	<u>7.0</u>
합계		783	100



2023학년도			
구분	전형요소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236	30.0
	<u>학생부종합</u>	<u>501</u>	<u>63.7</u>
	기타 (재외국민)	14	1.8
정시	<u>수능위주</u>	<u>35</u>	<u>4.5</u>
합계		786	100

다. 전형명 변경 및 전형 신설

2022학년도	
전형요소	전형명
학생부 교과	<u>학생부교과(한동인재)</u>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학생부종합(대안학교)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
수능	수능(일반학생)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23학년도	
전형요소	전형명
학생부 교과	<u>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u>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학생부종합(대안학교)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u>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u>
수능	수능(일반학생)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라.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요소	전형명	인원	증감	비고
수시	학생부 교과	<u>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u>	<u>136</u>	+ 1	전형명 변경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학생부 종합	<u>학생부종합(G-IMPACT인재)</u>	<u>219</u>	- 21	
		<u>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u>	<u>100</u>	+ 20	
		<u>학생부종합(대안학교)</u>	<u>90</u>	+ 15	
		<u>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u>	<u>45</u>	+ 5	
		학생부종합(고른기회)	34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u>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u>	<u>3</u>	+ 3	전형 신설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14			
정시	수능	<u>수능(일반학생)</u>	<u>35</u>	- 20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		
합계			786		

* 별도의 모집인원은 없으며,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미충원 시 이월하여 선발함

마. 자기소개서 폐지 : 학생부종합전형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제출	<u>자기소개서 미제출</u>

바. 지원자격 확대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국내 정규고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자 (전문계고, 예체고, 특성화고, 각종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등 지원 불가)	<u>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 학생부교과전형

2022학년도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① 또는 ②)
한동인재 지역인재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u>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1개 영역 1등급</u>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u>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1개 영역 2등급 이내</u>



2023학년도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① 또는 ②)
학생부교과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u> (단, 2개 영역 합에 <u>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u>)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1개 영역 1등급</u>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u> (단, 2개 영역 합에 <u>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u>)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1개 영역 2등급 이내</u>

* 그 외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아. 면접 배수

2022학년도		
구분	전형명	1단계 선발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전(全) 전형	250%
	재외국민 전형	300%



2023학년도		
구분	전형명	1단계 선발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전(全) 전형	250%
	<u>재외국민 전형</u>	<u>350%</u>

2. 정시 주요사항

가. 선발인원 : 일반학생 35명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능(일반학생) 55명	수능(일반학생) 35명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명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명

* 정원외 전형은 별도의 모집인원은 없으며,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미충원 시 이월하여 선발함

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2022학년도	2023학년도
- 국어 : 35 % - 수학 : 35 % - 영어 : 20 % - 탐구(사회/과학) : 10% - 한국사 : 등급별 가산점	전년도와 동일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 가산점을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다.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90점, 4등급: 80점, 5등급: 70점, 6등급: 60점, 7등급: 50점, 8등급: 40점, 9등급: 30점	전년도와 동일

라.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1등급~4등급: 10점, 5등급: 9.8점, 6등급: 9.6점, 7등급: 9.4점, 8등급: 9.2점, 9등급: 9점	전년도와 동일

3.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

가. 학생부 반영교과

반영교과*		반영방법	점수활용 지표**
일반과목 (진로선택을 제외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목의 전 과목]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의 전 과목] 성적 중 우수한 성적 반영	반영교과목의 전 과목을 이수단위 합으로 반영	석차등급
진로선택과목	전 교과	최고점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	성취평가등급

* 반영교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항목에 표시된 대로 반영함

** 등급별 배점구간 등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나. 학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반영 범위	고교졸업년도
교과성적 100%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재수생 포함)	제한없음

다. 비교내신 적용대상자 반영방법

전형대상	반영방법	대상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 필수과목: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환산점수: 원점수 96점 이상(77점으로 환산), 원점수 95~91점 (60점으로 환산), 원점수 90~86점(40점으로 환산), 원 점수 85~81점(23점으로 환산), 원점수 80~76점(11점 으로 환산), 원점수 75점 이하(0점으로 환산)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해외고 출신자 기타	-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추후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① 또는 ②)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1등급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가.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탐구역량 등을 본교 교육 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

전형명		공통	기타
학생부 종합	G-IMPACT인재 글로벌인재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고른기회 장애인 등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 검정고시/해외고 졸업자(해당서류 제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대체서식 등
	대안학교		·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소프트웨어인재		· 없음

*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합니다.

** 기타 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2단계 면접고사

면접고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본교는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개설 학부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공영영상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전 학부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36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수시] 학생부 위주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19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00
			학생부종합(대안학교)	90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45
			학생부종합(고른기회)	34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3
이공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수시]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14
			전교육과정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IT융합대학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AI-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심화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AI융합교육원 AI융합전공 ICT창업학부 ICT융합전공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35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
합 계				786명

* US & International Law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글로벌융합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 신입생 100%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 모집학부 및 전공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admissions.handong.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 수능(일반학생)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과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농어촌학생)과 정시 수능(기회균형선발)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6.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선발비율	수능 최저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36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00%	-	있음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학생부 위주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19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250%	없음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00				
		학생부종합(대안학교)	90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45				
		학생부종합(고른기회)	34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3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14		350%		
		전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일괄합산: 서류 40%, 면접 60%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35	일괄합산: 수능 100%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과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농어촌학생)과 정시 수능(기회균형선발)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PART 2. 수시

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2. 학생부교과(지역인재)
3.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5.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6.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7. 학생부종합(대안학교)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9. 학생부종합(고른기회)
10.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1.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36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① 또는 ②)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1등급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2.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60명

2. 지원자격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3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① 또는 ②)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3.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 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① 또는 ②)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학생부교과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① 또는 ②)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단, 2개 영역 합에 수학(기하), 수학(미적분),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5.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19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6.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0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3)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수학기간은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함
- 해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
- 해외학교 과정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홈스쿨과정 등은 제외함
- 해외이수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사이트(<https://www.isi.go.kr/>)에서 확인 가능함

* 위의 학교 졸업자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없는 자는 국내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7. 학생부종합(대안학교)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90명

2. 지원자격

아래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2개 학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 3) 비인가 대안학교 : 국내 소재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함. 단,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10~12학년) 교육과정의 졸업(예정)자를 말함
- 2개 학기란 1년 2학기제에서 2개 학기를 의미하며, 1년 3학기제의 경우 총 3개 학기, 1년 4학기제의 경우에는 총 4개 학기를 의미함
- 학기 인정 범위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학기 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45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직업군인 : 「군인사법」 제2조(적용범위) 1호에 해당되는 자
- ②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3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 ③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 ④ 교도관공무원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자
- ⑤ 환경미화원 :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 ⑥ 집배원 :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일반직, 교육직)의 자녀

- ① 교육공무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 ② 일반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

3)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
- ②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

- 농어촌지역은 읍면 소재만 인정하며,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무 중 또는 시무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미자립 교회는 교단, 단체 등에서 미자립으로 인정한 교회만 인정함
- 한국기독교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5)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7) 장애인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8)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가능한 자)의 자녀

9) 조손가정의 손자녀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주민등록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10)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 발급 가능한자) 또는 그의 자녀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9.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4명

2.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가보훈대상자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사함

- 2) 농어촌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기회균형선발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특성화고교 졸업자 :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
 - ②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 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단,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됨
 -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됨
- 5) 서해5도 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6) 만학도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023.3.1 기준으로 만 23세 이상인 자(2000.3.1 이전에 출생한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0.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1.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PART 3. 정시

1. 수능(일반학생)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3.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1. 수능(일반학생)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5명

* 2023학년도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점	95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점	95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3.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점	95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PART 4.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재외국민(3월 입학, 정원외)
2.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4. 외국인(3월/9월 입학, 정원외)

1. 재외국민(3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4명

나.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외국 교육과정의 이수기간(학생재학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대상	국외 기간 (연속 · 비연속)		
		재학	근무	체류
▪ 영주교포의 자녀 ▪ 공무원, 상사직원, 외교통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자영업, 현지법인, 국외파견 교직원, 국외선교사, 외국유학연수자	학생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배우자	-	-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350%	100%	-
2단계	100%	70%	30%

라. 전형방법

- 1)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심사로 2단계 면접고사 대상자를 350% 선발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2)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모집 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 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제2호, 제7호 적용)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참고>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후 지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없음	100%	-
2단계	제한없음	70%	30%

라. 전형방법

- 1)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2)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 인원은 2단계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총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일괄합산	제한 없음	40%	60%

라. 전형방법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 서류 미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인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총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면접고사 결시자 및 과락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_(3월/9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 없음	100%	
2단계	제한 없음	50%	50%

라. 전형방법

-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 인원은 2단계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충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 나 님 의 · 방 법 으 로 · 하 나 님 의 · 인 재 를 · 양 성 하 는 · 하 나 님 의 · 대 학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입학처